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4. 4.18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력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법제·상벌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법제·상벌위원회는 본 협회, 시·도장애인력비협회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적타당성, 체계성, 합리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 행정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 협회,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맹단체) 및 그 단체에 속한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 4 조(기능) 법제·상벌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 협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맹단체)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및 협회장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 협회,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맹단체)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제 5 조(구성) ① 법제·상벌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법제·상벌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법제·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7 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8 조(임기) ① 법제·상벌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11 조(의결정족수) 법제·상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 조(긴급한 업무처리) 법제·상벌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법제·상벌위원

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법제

제14 조(심의대상) 법제·상벌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협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협회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본 협회 및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표창

제15조(표창 대상)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체육 보급, 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체육인에게 수여한다.

제16 조(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정부 및 체육회 포상과 본 협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 및 체육회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7조(자체표창의 구분) ① 본 협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② 본 협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과 창립기념 표창이 있다.

③ 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력비인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 연구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장애인복지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자, 본 협회,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모범직원(본 협회, 시·도장애인력비협회)

⑤ 국내장애인력비발전에 기여한자 또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조(절차) ① 정부 및 체육회 포상은 시·도장애인력비협회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하여 추천한다.

② 체육상은 시·도장애인력비협회장, 본 협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징 계

제19조(상벌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장애인력비협회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증거우선의 원칙) 법제·상벌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과 관련한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 해태 등 비위의 사건
2. 부정 참가, 승부조작, 심판 편파 판정, 경기진행 방해 등각 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단체 인사위원회(가칭)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제22조(징계관할) 위원회별 징계 사건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상벌위원회.

가.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원 징계 사건

나. 시·도장애인력비협회 등록 지도자 징계 사건

다. 시·도장애인력비협회 등록 심판 징계 사건

라. 시·도장애인력비협회 등록선수 징계 사건

2.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상벌위원회.

가.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원 징계 사건

나. 시·도장애인력비협회 임원 징계,

3.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

가. 제1호, 제2호에 따른 시·도장애인력비협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건

나. 이 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사건의 건

4.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는 본 협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징계기관 분류) 본 협회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며, 시·도장애인력비협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본 협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4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

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

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⑥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

제25조(징계요구) 본 협회의 장은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본 협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26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5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징계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

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선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

제29조(징계의 감경 및 해제)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표창 받은 공적
4. 본 협회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2. 성폭력, 선수 폭력

③ 본 협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감경, 사면, 해제, 복권은 본 협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징계의 통보)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심사 요구) ① 징계 혐의자는 해당단체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요구를 받은 해당단체 상벌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의결) ① 해당단체 상벌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1조에 의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본 협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

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본 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 ④ 해당단체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신청) ① 해당단체 상벌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은 해당단체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본 협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해당단체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이의신청에 대한 본 협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징계의 보고) 해당단체 상벌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해당단체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4. 4.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4.18>

적 조 서 (원 본)

| | | | | | |
|---------------------------|--------|----------|--------|----------|--|
| 1)성 명 | (한자) | 2)소 속 | | | |
| 3)본 적 | | 4)계 급 | | 5)군번 | |
| 6)주 소 | | 7)주민등록번호 | | 8)병과 | |
| 9)직위 및 직급 | | 10)근무 기간 | | 11)수공 기간 | |
| 12)수공 장소 | | | | | |
| 13)추천 훈열 | | 14)추천 서열 | | 15)사정 훈격 | |
| 주 요 경 력 (민간 및 군사학력과 경력) | | | | | |
| 16)년월일 | 17)이 력 | 18)년월일 | 19)이 력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 | | | | |
| 20)년월일 | 21)내 용 | 22)년월일 | 23)내 용 | | |
| | | | | | |
| | | | | | |
| 조 사 자 | | | | | |
| 24)소속 | | | | | |
| 25)계급 | | | 26)직 책 | | |
| 27)성명 | | | | | |
| 제반기록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 | |
| 200 | | | | | |
| 추천관직위 성명 | | | 직인 | | |

공 적 사 항